

# 심사보고서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545
----------	-----

2024. 4. 30.(화)  
행정문화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출자 : 이옥규 의원 등 7인
- 나. 제출일자 : 2024년 4월 11일
- 다. 회부일자 : 2024년 4월 11일
- 라. 상정일자 : 2024년 4월 23일
  - 제41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 상정·의결
-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이옥규 의원)

### 가. 제안사유

- 청남대 운영에 관하여 휴관일, 행위제한, 주차료, 사무위탁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가족친화형 제도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입장료 면제 및 감면대상 확대
- 청남대 컨벤션 시설 확충에 따른 시설 설치·운영 대상, 시설 명칭 및 사용료 등 운영 기준을 정비하여 청남대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개관 및 관람시간(안 제3조제1항1호)

- 입장료(안 제4조제2항·제3항, 별표 1)
- 입장금지 및 행위제한(안 제5조제2항)
- 시설 설치·운영 및 사용허가(안 제7조제1항)
- 사용료의 반환(안 제10조제1항)
- 시설 명칭 및 시설 사용료 변경, 신청서식 변경(안 별표 3, 별지 서식)
- 주차료 징수(안 제14조, 별표 2)
- 교육비 납부·감면 등(안 제15조제1항, 별표 4)
- 사무의 위탁(안 제16조)

###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서정호)

- 청남대는 2003년 4월 소유권이 충청북도에 이관되면서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에 의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제1항제1호에서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의 첫 번째 평일”의 단서를 추가함으로써 휴관일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였음.
  - 안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6세 이하의 영·유아”에게만 적용되던 입장료 면제 규정을 “7세 이하의 아동 및 보호자 1인”으로 확대하였으며, 제11호를 신설하여 충청북도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에 대한 입장료 면제 규정을 신설하였음.

- 안 제4조제3항 후단을 정비하여 입장료의 중복 할인의 경우 더 큰 금액으로 할인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정비하였음.
- 안 제10조제1항의 개정을 통해 종전 조례 제10조제1항 각호에 의해 규정되던 사용료 반환 기준을 별표 2를 통해 과오납한 경우, 천재지변이나 청남대의 사정으로 시설 사용을 하지 못한 경우, 신청자가 시설 사용료를 납부한 이후 시설 사용 시작 전에 신청을 취소한 경우로 사용료의 반환 규정을 세분화하였음.
- 종전의 조례 제14조에 따라 시행되던 주차료 징수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종전 별표 2 주차요금이 삭제, 안 제14조는 종전 조례 제15조로, 별표 2 주차요금은 시설 사용료 반환 기준으로 개정되었음.
- 안 제14조는 종전의 조례 제15조에서, 안 제15조는 종전의 조례 제16조에서, 안 제16조는 종전의 조례 제17조에서, 안 제17조는 종전의 조례 제18조에서 각각 이동하였음.
- 본 조례안은 6세 이하의 영·유아에게만 적용되던 입장료 면제 규정을 7세 이하의 아동 및 보호자 1인으로 확대함으로써 가족친화형 제도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충청북도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을 입장료 면제 대상에 추가함에 따라 건전한 기부문화 정착을 도모하는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문제로 지적됐던 주차장과 관련하여 주차료 징수 규정을 폐지, 청남대 운영에 있어 휴관일, 행위제한, 입장료 및 사무위탁과 관련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청남대

컨벤션 시설 확충에 따른 시설의 사용료 및 운영기준, 사용료 반환 규정 등을 정비하여 관리 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특별한 이견이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제3조제1항제1호 중 “월요일”을 “월요일, 단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의 첫 번째 평일”로 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제5호, 제6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제12호를 제1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7세 이하의 아동 및 보호자 1인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배우자, 선순위 유족, 상이1~3급자와 동행하는 보조인 1인
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배우자, 선순위 유족, 장애1~3급자와 동행하는 보조인 1인
11. 충청북도 아너소사이어티 회원
12. 「모자보건법」 제2조에 따른 임산부와 보호자 1인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료를 할인하여 징수한다. 다만, 중복하여 할인하지 아니하며 2개 이상 중복 시 더 큰 금액으로 할인한다.

1. 20인 이상 단체관람객: 별표 1의 단체입장료 적용
  2. 충청권 4개 시·도(충청북도,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치시를 말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별표 1의 개인입장요금에서 1천원을 할인
  3. 소장과 사전협의하여 관광협약을 체결한 기관 단체 및 사업체: 별표 1의 개인입장요금에서 2천원을 할인
  4. 문의면 지역의 상가나 식당, 숙박시설을 당일 이용하여 제공받은 영수증(1인 1만원 이상) 또는 할인권을 제시하는 경우: 별표 1의 개인입장요금에서 2천원을 할인
  5. 청남대 내 시설사용 신청자: 별표 1의 개인입장요금에서 2천원을 할인
- 제5조제2항제1호 중 “취사행위” 를 “취식행위” 로 한다.

제7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제10호 및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0호(종전의 제9호) 중 “강의실”을 “회의실, 강의실”로 한다.

9.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발전을 위한 지역주민 농·특산물 등 홍보·판매·운영시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이미 납부한 시설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별표 2 경우에 따라 시설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제1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의무실 운영, 인력배치 기준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를 제14조부터 제17조로 한다.

제15조제1항(중전의 제16조제1항)에서 “제12조”를 “제14조”로 한다.

제16조제6호(중전의 제17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6. 매표 및 주차 관리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입 장 료 (제4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개 인	단 체 및 야간개장 (17:30이후)	비 고
어 른	6,000	5,000	19세 ~ 64세
청소년	4,000	3,000	13세 ~ 18세
어린이	3,000	2,000	7세 ~ 12세
노 인	3,000	2,000	65세 이상
군 인 등	4,000	3,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계급이 하사 이하인 군인</li><li>• 사회복지무요원</li></ul>

[별표 2]

## 시설 사용료 반환기준 (제10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시설 사용료를 과오납한 경우		· 과오납한 시설 사용료 전액
천재지변이나 청납대의 사정으로 시설사용을 하지 못한 경우		· 납부한 시설 사용료 전액
신청자가 시설 사용료를 납부한 이후 시설사용 시작 전에 신청을 취소한 경우	시설사용 예정일 3일이상 이전	· 납부한 시설 사용료의 100 퍼센트 해당액
	시설사용 예정일 2일 이전	· 납부한 시설 사용료의 90 퍼센트 해당액
	시설사용 예정일 1일 이전	· 납부한 시설 사용료의 80 퍼센트 해당액
	시설사용 예정일	· 납부한 시설 사용료의 70 퍼센트 해당액

[별표 3]

## 청남대 시설 사용료 (제8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장 소	시설명 및 사용 구분	사용료	비 고
청남대 내	내·외부 촬영	500,000/5시간	· 드라마, 영화, 광고(CF)등 촬영 · 1시간 초과시 100,000원 추가
	야외 결혼	500,000/일	
본관	제2영빈관	200,000/4시간	· 1시간 초과시 20,000원 추가
대통령기념관 (별관)	기획전시실	100,000/일	· 1시간 초과시 20,000원 추가
	세미나실	100,000/4시간	
	회 의 실	80,000/4시간	
	강 당	150,000/4시간	
대통령기념관	제1영빈관	700,000/일	· 1시간 초과시 20,000원 추가
	국무회의실	200,000/4시간	
임시정부기념관	회 의 실	200,000/4시간	· 1시간 초과시 20,000원 추가
	세미나실	150,000/4시간	

- ※ 야간 사용료는 50% 할증(18~21시)
- ※ 야외결혼의 경우 비수기(12~3월, 7~9월) 및 14시 이후의 건에 대해서는 50% 할인
- ※ 시설 사용료는 위 기재된 금액을 원칙으로 하되, 그 밖에 명기되지 아니한 시설 사용료는 상호 협의에 따른다.
- ※ 각 시설 사용별 세탁비는 별도 부과
- ※ 냉·난방에 대한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
- ※ 주중 시설사용 신청에 한해서 20% 할인

[별표 4] <신설 2023.5.12.>

## 교육비 반환기준 (제16조제4항 관련)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교육비를 과오납한 경우		· 과오납한 교육비 전액
천재지변이나 청남대의 사정으로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은 경우		· 납부한 교육비 전액
신청자가 교육비를 납부한 이후 교육프로그램 시작 전에 신청을 취소한 경우	교육프로그램 시작예정일 7일 전까지	· 납부한 교육비 전액
	교육프로그램 시작예정일 5일 전까지	· 납부한 교육비의 70퍼센트 해당액
	교육프로그램 시작예정일 3일 전까지	· 납부한 교육비의 50퍼센트 해당액
	교육프로그램 시작예정일 당일 까지	· 반환하지 않음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개관 및 관람시간) ① 청남대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p> <p>1. 1월 1일, 설날, 추석 및 매주 <u>월요일</u></p> <p>2. (생략)</p> <p>② ~ ④ (생략)</p> <p>제4조(입장료) ① (생략)</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료를 면제한다.</p> <p>1. (생략)</p> <p>2. <u>6세 이하의 영·유아</u></p> <p>3.·4. (생략)</p> <p>5. 「<u>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u>」 제4조에 따른 <u>국가유공자</u></p>	<p>제3조(개관 및 관람시간) ① ---- ----- ----- -----.</p> <p>1. ----- <u>월요일</u>, 단 <u>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의 첫 번째 평일</u></p> <p>2. (현행과 같음)</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4조(입장료)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 (현행과 같음)</p> <p>2. <u>7세 이하의 아동 및 보호자 1인</u></p> <p>3.·4. (현행과 같음)</p> <p>5. 「<u>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u>」 제86조에 따른 <u>국가유공자와 배우자, 선순위 유족, 상이1~3급자와 동행하는 보조인 1인</u></p>

6.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7. ~ 10. (생략)

11. 임신부 및 그와 동반하는 사람 1명

<신설>

12.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료를 할인하여 징수한다. 다만, 중복하여 할인하지 아니한다.

<신설>

1. 충청권 4개 시·도(충청북도,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치시를 말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단체입장료를 적용

2. 소장과 사전 협의하여 관광협약을 체결한 기관 단체 및 사업체, 충청북도가 주관하는

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배우자, 선순위 유족, 장해1~3급자와 동행하는 보조인 1인

7. ~ 10. (현행과 같음)

11. 충청북도 아너소사이어티 회원

12. 「모자보건법」 제2조에 따른 임신부와 보호자 1인

13. (현행 제12호와 같음)

③ -----  
-----  
----. ----- 안  
니하며 2개 이상 중복 시 더 큰  
금액으로 할인한다.

1. 20인 이상 단체관람객: 별표 1의 단체입장료 적용

2. -----  
-----  
-----

--- 별표 1의 개인입장요금에서 1천원을 할인

3. -----  
-----  
-----

행사 등에 참석하고 행사기간 종료 후 3일 이내 입장하는 경우: 별표 1의 입장요금에서 1천원을 할인

3. 문의면 지역의 상가나 식당, 숙박시설을 당일 이용하여 제공받은 할인권을 제시하는 경우: 별표 1의 입장요금에서 2천원을 할인

3의2. (생략)

<신설>

4. (생략)

④·⑤ (생략)

제5조(입장금지 및 행위제한) ① (생략)

② 관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정된 장소 외 흡연 또는 취사행위

2. ~ 4. (생략)

제7조(시설 설치·운영 및 사용허가) ① 청남대의 이미지 제고 및 충청북도와 주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  
----- 개인입장요금에서 2천원-----  
-----

4. -----  
----- 영수증(1인 1만원 이상) 또는 할인권-----  
---- 개인입장요금-----

4의2. (현행 제3호의2와 같음)

5. 청남대 내 시설사용 신청자:  
별표 1의 개인입장요금에서 2천원을 할인

6. (현행 제4호와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제5조(입장금지 및 행위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취식행위

2. ~ 4. (현행과 같음)

제7조(시설 설치·운영 및 사용허가) ① -----  
-----  
-----



정하는 경우에는 관람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설치·운영 및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1. ~ 8. (생략)

<신설>

9. 교육시설(강의실, 체험실, 생활관, 그 밖의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10. (생략)

② ~ ④ (생략)

제10조(사용료의 반환) ① 시설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납부자에게 반환한다.

1. 사용개시일 전에 사용 취소를 신청한 경우 : 사용료 10%를 공제한 잔액

2. 사용개시일 이후에 사용 취소를 신청한 경우 : 사용일을 공제한 잔여일의 사용료

② (생략)

제12조(의무실 설치) ①·② (생략)

-----  
-----  
-----.

1. ~ 8. (현행과 같음)

9.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발전 을 위한 지역주민 농·특산물 등 홍보·판매·운영시설

10. -----회의실, 강의실-----  
-----  
--

11. (현행 제10호와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사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시설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별표 2 경우에 따라 시설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의무실 설치)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4조(주차료 징수) ① 소장은

청남대 주차장 사용자에게 주차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주차요금은 별표 2와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과 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원 차량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차량
3. 청남대의 각종 문화행사 등에 직접 출연 또는 참여하는 차량
4.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 자동차
5.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자 또는 그 보호자가 운전하는 차량
6.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의무실 운영, 인력배치 기준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른 국가유공증 소지자에 한함)이 운전하는 차량

7.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6항에 따른 민주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소지자에 한함)이 운전하는 차량

8. 병무청장이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충청북도민

9. 문의면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서 다른 방문객을 안내하는 자

10. 충북도민대상 수상자 및 명예도민

11.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상 감면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5조(교육프로그램의 운영) ① 도지사는 청남대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교육프로그램의 운영)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교육프로그램의 취지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합숙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6조(교육비 납부·감면 등) ① 제12조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교육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17조(사무의 위탁) 청남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관광명소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전문기관 또는 관련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 5. (생략)

6. 주차장 운영 관리

7.·8. (생략)

제18조(상표 등의 사용) ① 청남대관리사업소가 등록된 상표 등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별지 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청남대 홍보 등에 효과가 있다

제15조(교육비 납부·감면 등)

① 제14조-----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사무의 위탁) -----  
-----  
-----  
-----  
-----.

1. ~ 5. (현행과 같음)

6. 매표 및 주차 관리

7.·8. (현행과 같음)

제17 (상표 등의 사용) (현행과 같음)

고 판단될 경우에는 무상사용  
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사용료,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  
은 상호협약에 의한다.

# 비 용 추 계 서

## 1. 사업개요

- 청남대 운영에 관하여 휴관일, 입장시간, 행위제한, 주차료, 사무위탁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가족친화형 제도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입장료 면제 및 감면대상 확대
- 청남대 컨벤션 시설 확충에 따른 시설 설치·운영 대상, 시설 명칭 및 사용료 등 운영기준을 정비하여 청남대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2. 비용 발생 요인

- 입장료 면제대상 확대
  - 7세 이하의 아동 및 보호자 1인
  - 충청북도 아너소사이어티
- 입장료 할인대상 확대
  - 20인 이상 단체관람객
  - 관광협약체결 기관 단체 및 사업체(1,000→2,000원)
  - 청남대 내 시설사용 신청자(2,000원)
- 청남대 시설 사용료 변경
- 주차료 폐지

## 3. 관련조문

- 안 제4조(입장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료를 면제한다.
  - 2. 7세 이하의 아동 및 보호자 1인
  - 11. 충청북도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
- 안 제4조(입장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료를 할인하여 징수한다.
  - 1. 20인 이상 단체관람객
  - 3. 관광협약체결 기관 단체 및 사업체(1,000→2,000원)

## 5. 청남대 내 시설사용 신청자(2,000원)

- 안 제8조(사용료 납부 및 감면) ① 제7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3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청남대 주차료 폐지로 제14조(주차료 징수) 삭제

## 4. 비용 추계결과

###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4~2028년까지 5년간으로 함.
- 물가상승률은 고려하지 않음.

### 나. 추계 결과

#### ○ 산출과정

##### - 입장료 면제대상 확대

##### ① 7세 이하의 아동 및 보호자 1인

: 월평균 100명 가정(동반포함)×12개월×6,000원 = △7,200천원

##### ② 충청북도 아너소사이어티

: 166명(현재 아너소사이어티 수(83명) 연 2회 방문 가정)×6,000원 = △996천원

'24년(①+②)\*9개월/12개월 = △6,147천원

'25년(①+②) = △8,196천원

'26년(①+②) = △8,196천원

'27년(①+②) = △8,196천원

'28년(①+②) = △8,196천원

##### - 입장료 할인대상 확대

##### ① 20인 이상 단체관광객

: 128,152명('23년 단체입장객수 가정)×1,000원 = △128.152천원

##### ② 관광협약체결 기관 단체 및 사업체

: 25,276명('23년 협약단체 입장객수 가정)×1,000원 = △25,276천원

##### ③ 청남대 내 시설사용 신청자

: 5,452명('23년 시설사용 유료입장객수 가정)×2,000원 = △10,904천원

'24년(①+②+③)\*9개월/12개월 = △123,249천원

'25년(①+②+③) = △164,332천원

'26년(①+②+③) = △164,332천원

'27년(①+②+③) = △164,332천원

'28년(①+②+③) = △164,332천원

- 청남대 시설 사용 대상 추가 및 비용 인상

① 본관 제2영빈관(200,000원 / 4시간)

: 25회('23년 각 대관시설별 연평균 사용횟수 가정)×200,000원 = 5,000천원

② 대통령기념관(별관) 기획전시실(50,000원 인상)

: 25회('23년 각 대관시설별 연평균 사용횟수 가정)×50,000원 = 1,250천원

③ 대통령기념관(별관) 세미나실(70,000원 인상)

: 25회('23년 각 대관시설별 연평균 사용횟수 가정)×70,000원 = 1,750천원

④ 대통령기념관(별관) 회의실(60,000원 인상)

: 25회('23년 각 대관시설별 연평균 사용횟수 가정)×60,000원 = 1,500천원

⑤ 대통령기념관(별관) 강당(100,000원 인상)

: 25회('23년 각 대관시설별 연평균 사용횟수 가정)×100,000원 = 2,500천원

⑥ 대통령기념관 제1영빈관(200,000원 인상)

: 25회('23년 각 대관시설별 연평균 사용횟수 가정)×200,000원 = 5,000천원

⑦ 대통령기념관 국무회의실(200,000원 / 4시간)

: 25회('23년 각 대관시설별 연평균 사용횟수 가정)×200,000원 = 5,000천원

⑧ 임시정부기념관 회의실(200,000원 / 4시간)

: 25회('23년 각 대관시설별 연평균 사용횟수 가정)×200,000원 = 5,000천원

⑨ 임시정부기념관 세미나실(150,000원 / 4시간)

: 25회('23년 각 대관시설별 연평균 사용횟수 가정)×150,000원 = 3,750천원

'24년(①+②+③+④+⑤+⑥+⑦+⑧+⑨)\*9개월/12개월 = 23,062천원

'25년(①+②+③+④+⑤+⑥+⑦+⑧+⑨) = 30,750천원

'26년(①+②+③+④+⑤+⑥+⑦+⑧+⑨) = 30,750천원

'27년(①+②+③+④+⑤+⑥+⑦+⑧+⑨) = 30,750천원

'28년(①+②+③+④+⑤+⑥+⑦+⑧+⑨) = 30,750천원

- 주차료 폐지

: 월평균 14,500대 가정 ×12개월×1,500원 = △261,000천원



'24년 261,000천 원\*9개월/12개월 = △195,750천 원

'25년 = △261,000천 원

'26년 = △261,000천 원

'27년 = △261,000천 원

'28년 = △261,000천 원

○ 산출결과 : 연평균 402,778천원, 2024년부터 향후 5년간 총 1,913,196천원  
세입 감소

다. 재원조달방안 : 해당없음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붙임

6. 작성자 : 문화체육관광국 청남대관리사업소장 김 종 기

##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 입	△302,084	△402,778	△402,778	△402,778	△402,778	△1,913,196
입장료	△129,396	△172,528	△172,528	△172,528	△172,528	△819,508
주차료	△195,750	△261,000	△261,000	△261,000	△261,000	△1,239,750
시설사용료	23,062	30,750	30,750	30,750	30,750	146,062
세 출	-	-	-	-	-	-
재원 조달	-	-	-	-	-	-
자체 수입	소 계	-	-	-	-	-
	지방세	-	-	-	-	-

## 관련법령 발췌

###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161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